##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5411

제안연월일: 2024. 11.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건 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전체회의 상정일     |
|--------------------|------|-------|--------------|--------------|
| 군인복지기본법<br>일부개정법률안 | 468  | 김성원   | 2024. 6. 13. | 2024. 8. 27. |
|                    | 2123 | 한기호   | 2024. 7. 23. | 2024. 8. 27. |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 안심사소위원회(2024. 9. 23.)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 하기로 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2024. 9. 25.)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제11조의2).
- 나. 군인복지시설 중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 다.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7조 신설).

법률 제 호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학교를 설립하는 자"를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 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 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군인가족의 날) 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  |  |
|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            | 드)                           |  |  |
| 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             |                              |  |  |
| 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                              |  |  |
| 제2조에 따른 <u>학교를 설립하는</u>     | <u>ই</u> }                   |  |  |
| <u>자</u> 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 교를 설립하는자 또는 같은 법             |  |  |
|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            |  |  |
|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  |  |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  |  |
|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u> 자</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t;신 설&gt;</u>          |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  |  |
|                             |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             |  |  |
|                             | 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             |  |  |
|                             | 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u>제15조(</u> 노후설계 교육) (생 략) | <u>제16조(</u> 노후설계 교육) (현행 제1 |  |  |
|                             | 5조와 같음)                      |  |  |
| <u>&lt;신 설&gt;</u>          | 제17조(군인가족의 날) ① 군인           |  |  |
|                             |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             |  |  |

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 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 을 군인가족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 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 다.
-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 관이 정한다.